

보 고 사 항

□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○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- '99. 10. 14

< 공고내용 >

(화순군의회 공고 1999-9 호)

- 집회일시 : '99. 10. 18 (월) 오전 10시
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□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9. 2 집행부 이송

◦ 공포일자 : '99. 9. 20

◦ 공포번호 : 화순군조례 제 1611 호

○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

◦ 공포일자 : '99. 9. 20

- '99. 9. 2 집행부 이송

◦ 공포번호 : 화순군조례 제 1612 호

○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- '99. 9. 2 집행부 이송

◦ 공포일자 : '99. 9. 20

◦ 공포번호 : 화순군조례 제 1613 호

□ 각종 의안 발의상황 보고

○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- '99. 10. 14 의원발의

◦ 발 의 자 :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4

◦ 회 기 : '99. 10. 18 - 10. 26 (9일간)

○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- '99. 10. 14 의원발의

- 발 의 자 :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4
- 출석요구내용 : 별 첨

○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

- '99. 10. 15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보호·고용증진 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○ 주요골자

-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허가 할 때에는 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)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.

※ '99. 10. 15. 총무위원회로 회부

○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10. 15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함.

○ 주요골자

가.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재산매각시 분할납부 이자부담 완화

(안 제22조 제1항 제5호, 제6호)

- 10년 분할납부 연 8%이자 → 10년 분할납부 연 5%이자

나. 경작목적의 대부료 산정(안 제23조 제2항)

-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 →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

다. 생활보호대상자 주거용 대부료 요율 완화 (안 제23조 제6항)

-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→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

라. 외국인 투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

(안 제23조의 3)

- 제조업인 사업 → 사업

마. 수의계약 배각범위를 확대 (안 제39조의 2)

-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5년이상 계속 대부받아 실경작중인 자에게는 10,000㎡이하까지 범위확대
- 폐전부지 양여받기 이전부터 계속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6,600㎡이하까지

바. 공유재산 취급에 있어 조례 이외사항 준용 규정을 명백히 함 (안 제62조)

-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 → 공유재산의 질의회신, 지침, 편람 등 예규

※ '99. 10. 15. 총무위원회로 회부

○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- '99. 10. 11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지임대차 규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함.

○ 주요골자

- 임대차의 상한을 지역별, 농작물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조례로 정한 것을 폐지

※ '99. 10. 15. 산업·건설위원회로 회부

○ '99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- '99. 10. 11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'99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.

○ 주요골자

가. 예산편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비 고
계	135,137	131,819	3,318	2.5% 증
일반회계	105,893	101,564	4,329	4.3% 증
특별회계	29,244	30,255	△1,011	△3.3% 감

나. 세입재원내역(일반회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지방세	세외수입	지방교부세	국고보조금	도비보조금	비고
4,329	183	831	656	1,410	1,249	

다. 일반회계 세출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비 고
계	29,244	30,255	△1,011	
주택사업	280	280	0	
의료보호기금운영	2,780	2,780	0	
상수도사업	6,103	6,673	△570	
농림수산업진흥기금관리	824	824	0	
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	329	329	0	
농공단지조성사업	10,139	10,580	△441	
주차장사업	764	764	0	
공영개발사업	8,025	8,025	0	

라. 특별회계 세출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비 고
계	29,244	30,255	△1,011	
주 택 사 업	280	280	0	
의 료 보 호 기 금 운 영	2,780	2,780	0	
상 수 도 사 업	6,103	6,673	△570	
농 립수산업 진흥기금 관리	824	824	0	
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	329	329	0	
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	10,139	10,580	△441	
주 차 장 사 업	764	764	0	
공 영 개 발 사 업	8,025	8,025	0	

※ '99. 10. 11.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회부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- '99. 10. 14 의원 발의

○ 주 문

-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수가 제출한 '99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· 활동기간 : '99. 10. 18 ~ 10. 26(9일간)

· 구성인원 : 7명

○ 제안이유

- 금번 군수가 제출한 '99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대비 33억 1,77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예산안 심의는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

-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심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주문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제안함.

□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

1.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3. '99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
4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5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6. 기타 일반안건

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(안)

□ 회기 : '99. 10. 18(月) ~ 10. 26(火) (9일간)

월 일	부 의 안 건	비 고
'99. 10. 18 (月) 10:00	개 회 식	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- 위원장, 간사호신
	1. 회기결정의 건 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. '99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4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. 기타 일반안건	
'99. 10. 19 (火) ~ '99. 10. 23 (土) (5일간)	휴 회	○ 상임위원회 - '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- 일반안건 심사 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- '9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- 일반안건 심사
'99. 10. 24 (日) (1일간)	공 휴 일 휴 회	
'99. 10. 25 (月) 10:00	1. 군정질문 및 답변	

월 일	부 의 안 건	비 고
'99. 10. 26 (火) 10:00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군정질문 및 답변 2.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 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3.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4.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. 화순읍 도시계획시설(초등학교) 변경안 의견 개선의 건 6. 화순군 양민학살 진상조사특별위원 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.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8.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. '99년도 제3회 세입·세출추가경정 예산안 10. 화순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 11. 기타 일반안건 	

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(안)

월 일	출석요구자	출 석 요 구 사 유	비 고
'99. 10. 18 (月) 10:00	◦군 수 ◦전실과소장	◦개회식 ◦일반안전에 대한 질의답변	
'99. 10. 25 (月) 10:00	◦군 수 ◦전실과소장	◦군장질문에 대한 답변 ◦일반안전에 대한 질의답변	
'99. 10. 26 (火) 10:00	◦군 수 ◦전실과소장 ◦환 경 과 장	◦'99년도 세입·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◦일반안전에 대한 질의답변	